

의안 번호	제3663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9월 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9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,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, 산지경관 및 산림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산지전용허가기준(안 제2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